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053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3. 8.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26. 접수 제6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E 유한회사)는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9. D는 원고에게 9,856,556원 및 그중 5,373,318원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372898).

나. 원고의 D에 대한 가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24. 6. 5. 기준으로 원금 5,373,318원, 이자 17,841,035원 합계 22,324,273원이 남아 있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8.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G, D, H, I가 있으며, 상속분은 피고가 3/11, G, D, H, I가 각 2/11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8. 29.경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69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1963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여 1969. 2. 20.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2023년경까지 약 6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였고 D를 포함하여 4명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그 배우자인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 외 다른 자녀들 또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노령인 피고로 하여금 망인과 함께 거주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부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과 관련하여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 노모의 남은 여생 동안의 거주 보장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4,5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D가 특별히 기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별지